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·도지사 권한의 시·군·구
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비료관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
8591호, 2007. 8. 3 공포, 2008. 8. 4 시행)되어 도 업무 이관에
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신설(별표1)
 - 비료생산업 등록(신설) : 1건 20,000원
 - 비료수입업 신고(신설) : 1건 20,000원

4. 참고사항

-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, 같은 법 제12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
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제증명
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(별표1) 중 비료생산업 등록(1건 20,000원), 비료수입업 신고(1건 20,000원)을 신설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비료관리법」의 개정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
- 비료생산업 등록(신설) 및 비료수입업 신고(신설)업무가 2008. 8. 4. 이관된 사무로 「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」를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, 향후 이관된 사무는 행정변화 여건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.